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기관의장

람

제1715호 2022. 11. 30.(수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5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정정) ————— 1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-165호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정정)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-48(2022.4.11.)호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중 잘못 표기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2022. 11. 3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결정(변경) 취지(변경없음)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(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에 관한 계획

2. 위 치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19-15번지 일원(변경없음)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가. 교통시설(변경없음)

-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) 결정(신설)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-	주차장	서구 석남동 219-15번지 일원	-	증)3,648	3,648	-	지하 주차장

○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) 결정(신설) 사유서(변경없음)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주차장	· 주차장 신설(중복결정) - 위치: 석남동 219-15번지 일원 - 면적: 3,648㎡	· 주차장 설치를 통하여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

나. 공간시설(변경)

○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녹지)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- 기정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녹지	완충녹지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, 석남, 신현동	237,040	-	237,040	건설부고시 제54호 (1970.2.9.)	주차장 중복결정

- 변경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녹지	완충녹지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, 석남, 신현동	236,558	-	236,558	건설부고시 제54호 (1970.2.9.)	주차장 중복결정

※ 변경사유: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-471(2020.12.28.)호 변경 사항 반영

○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녹지) 결정(신설) 사유서(변경없음)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녹지	· 녹지 내 주차장 중복결정	· 완충녹지 지하에 주차장설치를 위한 중복결정

4. 지형도면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○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